

봉평전통시장 주차장 및 관리동 위탁운영 동의안

의안 번호	41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2018. 1. .

제 출 자 평 창 군 수

□ 제안이유

- 「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·관리 등에 관한 조례」 제4조 (위탁관리) 및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에 의거 봉평전통시장 주차장 및 관리동 위탁운영에 대한 평창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□ 관련근거

-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(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)
-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·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(시설물과 공동시설 등의 관리), 제30조(위탁관리)
-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□ 위탁운영 목적

-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 및 관리동에 대하여 시장고객 주차장, 관리사무소, 고객 쉼터 및 체험장, 상인 교육장 등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인회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고객 편의 제공 및 전통시장 활성화

□ 시설개요

- 위 치 :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 396-38
- 사업비 : 3,000백만원(국비 2,100, 도비 135, 군비 765)
- 시설현황 : 주차장 및 주차관리동 1동(지상 2층, 연면적 252.45㎡)
 - 주차장 : 5,851.5㎡(169면)
 - 관리동(1층) : 주차장 관리사무소 및 판매장(124.2㎡)
 - 관리동(2층) : 고객 체험장 및 상인회 회의장(128.25㎡)

□ 추진과정

- '16년 주차환경개선사업(중기청 공모사업) 선정 : '16. 3월
- 신축부지 선정 및 부지매입비 분할납부 : '16. 6월
 - 부지매입(6,000㎡, 1,877,637천원) : '16. 6월
- 주차환경개선사업(주차장) 및 관리동 착공 : '17. 4월
 - 주차장 : 690,224천원, 관리동 : 387,828천원
- 주차장 및 관리동 준공 : '17. 10월
- 주차 관리동 판매장 및 고객쉼터 인테리어 공사(36,096천원) : '17. 11월 ~ 12월

□ 관리수탁자 선정

- 봉평전통시장상인회와 위·수탁 협약 체결
 -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2항 및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,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·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 및 제30조에 따라 군수는 상인회와 협약에 따라 시장활성화 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음.

□ 향후계획

- 주차장 및 관리동 위·수탁 협약체결 및 사용료 부과 : '18. 1월
 - 계약기간 : '18. 1. ~ 2020. 12.(3년)
 - 수탁자 : 봉평전통시장상인회(회장 : 김형일)
 - 협약내용
 - 주차장(관리위탁) : 환경정화 및 시설물 관리, 차량통제 등
 - 관리동(관리+사무위탁) : 시설 관리 및 운영 등
 - 결정사용료 : 연 2,024,000원
 - ※ 관리동 산출사용료는 10,117,330원이며,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·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3에 따라 80%감면 적용
- 협약내용 공증 : '18. 1.

□ 관련자료

- 관련법령 1부. 끝.

관계법령 발췌

1.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

제11조 (상점가 활성화 지원) ②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, 절차 및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상업기반시설의 사후 관리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8조(국·공유지 사용료등 감면) ② 제1항에 따라 국·공유지의 사용료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

1. 주차장, 진입로, 통행로,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
2. 비 가리개, 공동창고, 물류센터, 상인교육시설 및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
3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

제19조(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「주차장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,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제20조(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) ②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, 사업별 지원한도, 사업신청을 위한 상인,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비율, 절차 및 사후 관리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.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

제7조 (국·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)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·대부료 또는 점용료(이하 이 조에서 “사용료등“이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에 따라 감면한다.

2.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: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에 따른 사용료등의 80 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

제8조 (공동시설)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“이라 함은 공동판매장·공동배달센터·공동작업장 및 고객센터를 말한다.

제9조 (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) ③제1항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되, 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
2.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사항
3. 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
4.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인·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

3. 평창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·관리 등에 관한 조례

제4조(시설물과 공동시설 등의 관리)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, 화장실, 비가림시설, 물류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.

제30조(위탁관리) ① 군수는 시장, 상권활성화구역과 상점가의 활성화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를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」, 「평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」, 「평창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」, 「평창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에게 군 소유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.

군수는 시설물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③제2항의 협약체결 내용에는 위탁관리의 대상범위, 위탁 관리기간,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제30조의3(국·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) 영 제7조에 따라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·대부료 또는 점용료(이하 “사용료 등”이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에 따라 감면한다.

2.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퍼센트

4.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 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자치사무는 평창군의회 동의의 를 얻어야 하며 기관위임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